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불법도청테이프 등의 처리에 관한 특별법안

(이은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61

발의연월일 : 2005. 8. 9.
발 의 자 : 이은영·문병호 의원 (2인)
찬 성 자 : 144인

제안이유

이른바 '안기부 불법도청테이프' 내용에 대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는 '미림팀'을 운영하여 정당과 정부, 언론, 대기업 등의 주요인사에 대한 불법 도청을 진행하였고 불법도청의 결과로서 얻어진 정보가 정관계에 대한 인사 등 국가운영에 영향을 주었으며,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 당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대기업의 사주가 언론사의 사장을 통하여 대선 후보들에게 불법 정치자금 또는 뇌물을 제공하였고 대기업이 평소 중요한 국가기관인 검찰의 주요 간부들에 대하여 이른바 떡값을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음이 드러났음. 이러한 행위들은 우리헌법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바 우리국민들은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한 분노와 함께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 차원에서 불법도청테이프 내용의 공개와 진상 규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 이는 정경유착, 권언유착 등의 실체를 규명하여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정치의 발전을 도모하라는 것임. 한편 우리 헌법은 사인간의 통신 비밀을 보호하고 있는 반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음. 이 법은 공정하고 독립적인 위원회로 하여금 불법도청테이프 내용의 공개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충족, 민주주의와 정치발전, 사생활에 대한 통신비밀보호, 국가안전보장과 공공복리 등의 목적을 조화롭게 달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사건과 관련된 테이프 및 녹취자료의 내용 공개여부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독립된 불법도청사건 진실위원회를 둠(안 제3조).

나. 불법도청사건 진실위원회는 불법도청 사건과 관련된 테이프 및 녹취자료의 내용 공개여부 및 공개시기에 관한 사항, 테이프나 녹취자료의 사후처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테이프 및 녹취자료의 공개 및 사후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함(안 제4조).

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국회가 선출하는 3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2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2인을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7조).

라.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6월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하며, 그 활동기간을 1회에 한하여 3개월 연장할 수 있음(안 제10조).

마.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설치함(안 제13

조).

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불법도청사건과 관련된 테이프 및 녹취자료를 위원회 외부로 유출하거나 그 내용을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7조).

사. 위원회는 불법도청사건과 관련된 테이프 및 녹취자료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그 내용이 공개 또는 누설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함(안 제17조).

아. 불법도청사건과 관련된 테이프 및 녹취자료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그 내용을 공개 또는 누설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3조).

법률 제 호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불법도청테이프 등의 처리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도청 사건과 관련된 테이프 및 녹취자료의 내용을 공정하고 독립적인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밝힘으로써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와 정치발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생활에 관한

통신비밀을 보호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불법도청사건"이라 함은 국가안전기획부가 정계, 재계, 언론계 주요인사 등의 대화를 불법적으로 도청한 사건 및 그 밖에 이와 관련이 있는 사건을 말한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

제3조(진실위원회 설치) ①불법도청사건과 관련된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법도청사건 진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업무 등)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불법도청 사건과 관련된 테이프 및 녹취자료의 내용 공개여부 및 공개시기에 관한 사항
2. 불법도청 사건과 관련된 테이프 및 녹취자료의 사후처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불법도청사건과 관련된 테이프 및 녹취자료의 내용을 위원회의 회의 이외에서 심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공개의 범위) ①위원회는 진실한 사실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불법도청사건과 관련된 테이프 및 녹취자료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한 범죄행위
2. 불법정치자금 또는 뇌물 수수 등에 의한 정경유착, 권언유착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공이익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외교상 비밀에 속하는 내용 및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테이프 등의 처리) 위원회는 관계 기관으로 하여금 불법도청 사건과 관련된 테이프 및 녹취자료의 폐기 또는 보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국가, 사회, 인권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제4조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3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2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2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1인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위임한다.

제9조(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①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6월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1회에 한하여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결격 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2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위원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13조(사무처의 설치)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사무처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위원회의 소속 직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4조(직원의 신분보장) 위원회 소속 직원은 형의 확정·징계처분 또는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15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특례규정

제16조(면책 특례) 위원회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판단하여 불법도청사건과 관련된 테이프 및 녹취자료를 공개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장 위원 및 직원의 의무

제17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①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불법도청사건과 관련된 테이프 및 녹취자료를 위원회 외부로 유출하거나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의결한 내용 이외의 내용을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위원회는 불법도청사건과 관련된 테이프 및 녹취자료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그 내용이 공개 또는 누설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자격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유사명칭사용의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진실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0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조사활동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보고) 위원회는 활동을 완료함과 동시에 활동 내용과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제23조(비밀누설 등)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자격사칭)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과태료) ①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조사활동의 지원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 등을 제출한 자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1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위원 및 직원의 임기) 위원 및 직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활동 완료와 동시에 종료한다.

비 용 추 계 서

□ 예산 : 35억원

o 인건비 : 15억원 (위원 7인, 사무처 인력 45명 기준)

o 사업비 : 10억원

- 관서운영비 : 6억원
-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 등 일반운영비 : 4억원

o 시설비, 자산취득비, 임차보증금 등 10억원

*** 산출 참고자료**

□ 친일진상규명준비기획단 및 일제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준비기획단 예산 : 기관별 43억/년 ('04)

o 인건비 : 26.8억 (인력 85명)

o 사업비 : 16.2억

(관서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o 설치당해년도 예산 추가 : 13.5억

(시설비, 자산취득비, 임차보증금 등)

국가안전기획부 및 국가정보원의 불법 도·감청 자료의 공개에 관한 특별법안

(천영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61

발의연월일 : 2005. 8. 9.

발 의 자 : 천영세·강기갑·권영길노회찬·단병호·심상정이영순·조승수·최순영현애자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가정보원의 발표에 따르면 김영삼 정부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및 김대중 정부 당시의 국가정보원이 불법 도·감청 조직을 설치 및 운영하여 정부 정당 기업 및 언론 등의 주요 인사에 대한 광범위한 불법 도·감청을 실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위법한 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진바 있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일부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내용 중에 기업인이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 정치인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언론이 대통령 선거 등에 직접 개입한 사실과 검찰 등의 주요 인사에게 대기업이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있어 국민들은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와 기업과 언론 정치권력이 유착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분노하고 있으며, 진상규명의 요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 실체가 축소·은폐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국민적 의혹 해소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진상규명을 위해서 불법 도청 자료인 테이

프 및 녹취록 등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등 기타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을 제정하여 범죄 혐의가 있는 내용을 공개 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도청녹음테이프"는 김영삼 정부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및 김대중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이른바 '미림팀'을 비롯한 각종 불법 도청 조직에 의하여 행하여진 불법도청의 결과물로써 사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 및 그 복사본을 말하며, "녹취록"은 도청녹음테이프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 및 그 복사본을 말하고 "보고문건"은 도청녹음테이프 및 녹취록을 근거로 하여 국가정보원 등이 작성한 보고용 서류를 의미함(안 제2조).

나. 도청녹음테이프 등의 내용 중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3조(뇌물공여등)에 정한 죄(특별법에 의하여 가중처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혐의가 있거나 위 혐의에 준하는 중대한 권력형비리 혐의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 공개하고, 간통 등 사생활 관련 범죄, 타인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 등 인격적 범죄, 그 밖에 범죄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안 제3조).

다. 보유기관의 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도청녹음테이프 등을 공개하여야 하며, 이 법 시행일 이후 도청녹음테이프 등을 보유하게 되거나 타 기관으로부터 인계받은 보유기관의 장은 보유한 날 또는 인계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여야 함(안 제3조).

라. 보유기관이 검찰 또는 특별검사인 경우, 보유기관의 장은 수사 상 필요에 따라 공소제기시까지 도청녹음테이프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검찰 또는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수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즉시 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3조).

마. 보유기관의 장은 도청녹음테이프 등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목록에는 도청녹음테이프 등의 녹음일시 및 장소, 도청녹음테이프 등에 들어 있는 대화자의 성명, 도청녹음테이프 등의 분량, 공개대상 혐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공개 여부를 기재하여야 함. 다만, 제3조제1항에 의하여 공개대상이 아닌 도청녹음테이프 등 및 제4조제2항의 경우에는 대화자의 성명을 공개하지 아니함.(안 제5조).

바. 도청녹음테이프 등을 보유하게 된 보유기관의 장은 그 보유 여부 및 도청녹음테이프 등의 분량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안 제6조).

사. 대한민국 국민인 자는 보유기관의 장에게 제5조제1항에 규정한 목록 및 제3조제1항에 의하여 공개대상인 도청녹음테이프 및 녹취록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안 제7조).

아. 이 법에 의하여 도청녹음테이프 등을 공개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함(안 제8조).

자. 도청녹음테이프 등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존한다(안 제9조).

법률 제 호

국가안전기획부 및 국가정보원의 불법 도·감청 자료의 공개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김영삼 정부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및 김대중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이른바 '미림팀'을 비롯한 각종 불법 도청 조직에 의하여 행하여진 불법도청의 결과물인 녹음테이프·녹취록 및 보고문건 등을 필요한 범위에서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며 진실을 규명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청녹음테이프"라 함은 김영삼 정부 당시 구 국가안전기획부 및 김대중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이른바 '미림팀'을 비롯한 각종 불법 도청 조직에 의하여 행하여진 불법도청 및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불법감청의 결과물인 녹음테이프 또는 그 복사본을 말한다.
2. "녹취록"이라 함은 도청녹음테이프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 또는 그 복사본을 말한다.
3. "보고문건"이라 함은 구 국가안전기획부 및 국가정보원이 도청녹음테이프 및 녹취록을 근거로 보고용으로 작성된 문서를 의미한다.

제3조(보유정보의 공개 및 금지) ①도청녹음테이프 ·녹취록 및 보고문건(이하 "도청녹음테이프등"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이하 "보유기관"이라고 한다)의 장은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제127조(공무상비밀의 누설),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누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제1항제2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및 그 밖의 관련 법률에도 불구하고 도청녹음테이프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혐의(범죄행위의 경우 공소시효가 완료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공개한다.

1.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3.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3조(뇌물공여등)에 정한 죄(특별법에 의하여 가중처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위반 혐의

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5. 「부패방지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중대한 권력형비리 혐의

②보유기관의 장은 도청녹음테이프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1. 간통 등 사생활 관련 범죄

2. 타인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 등 인격적 범죄

3. 그 밖에 범죄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적인 대화 내용

③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청녹음테이프등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 이후에 도청녹음테이프등을 보유하게 되거나 타 기관으로부터 인계받은 보유기관의 장은 보유하게 된 날 또는 인계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보유기관이 검찰 또는 특별검사인 경우, 보유기관의 장은 수사상 필요에 따라 공소제기시까지 도청녹음테이프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검찰 또는 특별검사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른 혐의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수사에 착수하지 아니 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즉시 이를 공개하여

야 한다.

제4조(일부의 공개) ①보유기관의 장은 도청녹음테이프등의 일부만이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도청녹음테이프등이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도청녹음테이프등의 대화자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대화자의 성명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목록의 작성) ①보유기관의 장은 도청녹음테이프등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목록에는 도청녹음테이프등의 녹음 일시 및 장소, 도청녹음테이프등에 들어 있는 대화자의 성명, 도청녹음테이프등의 분량, 도청녹음테이프등이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공개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도청녹음테이프등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공개대상이 아니거나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화자의 성명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조(보유 및 인계의 공고) 도청녹음테이프등을 보유하게 된 보유기관의 장은 보유하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도청녹음테이프등의 보유 여부 및 그 분량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공개의 절차) ①대한민국 국민인 자는 보유기관의 장에게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목록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대상인 도청녹음테이프등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제11조·제13조·제17조 내지 제20조는 도청녹음테이프등의 공개에 준용한다.

③그 밖에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위법성의 조각) 이 법에 의하여 도청녹음테이프등을 공개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9조(기록의 관리) 도청녹음테이프등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리·보존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안전기획부 및 국가정보원의 불법 도청과 불법 정치자금 제공 등의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강재섭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05. 8. 9.
발 의 자 : 강재섭·천영세·이낙연
김낙성 의원(4인)
찬 성 자 : 1 4 1 인

제안이유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가 1997년 대선 당시 대기업 및 언론사 간부 간의 대화 내용 등을 불법 도청한 사실과 함께 1994년부터 도청조직인 '미림'팀을 불법으로 운영해왔다는 사실이 최근 언론보도에 의해 드러났고, 국가정보원이 1998년 이후에도 유선전화 및 휴대폰 등의 불법도청을 자행해왔음을 스스로 고백함에 따라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음. 또한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 도청 테이프와 관련 녹취록 등이 외부로 유출되어 언론에 불법정치자금 거래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 등이 공개되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도청 테이프 등이 은폐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있는 등 국민들 사이에 이번 사건의 진상과 관련하여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언론 보도 의하면 안전기획부의 불법 도청자료 중에 대기업이 정치인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검찰의 주요인사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정치권력과 대기업, 언론사의 유착관계가 드러나 국민들의 의혹과 진상 규명의 요구가 높으며, 과거 권력형 비리 사건 등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한계가 많았고 검찰내의 주요인사 중에 일부 기업과 유착 관계를 맺어온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특별검사로 하여금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명백히 규명하여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다시는 국가 권력기관에 의한 불법 도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불법정치자금 거래 등을 근절시키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1993년 2월 25일 이후 국가안전기획부와 국가정보원의 각종 불법 도청 조직의 설치·운영 실태, 도청 대상과 범위 등 불법 도청의 실상 및 불법 도청 자료의 보관·관리·활용 실태, 그리고 불법 도청을 통하여 얻은 각종 자료·정보의 유출 · 유통과 관련된 실정법 위반사건 등과 이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나는 각종 불법도청자료의 내용 중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 국가기관, 정당, 기업, 언론사 및 개인 등의 실정법 위반사건 등으로 함(안 제2조).

나. 특별검사는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도 철저히 수사하여 위법사실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하며

수사결과를 발표함에 있어 불법도청테이프의 내용 중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공개함(안 제2조).

다.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1인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고, 대통령은 1인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하며, 대한변호사협회는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2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함(안 제3조).

라.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5조).

마.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바. 특별검사는 7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12인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그 후보자 중에서 6인을 특별검사보로 임명함.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60인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7조).

사.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할 수 없으며, 1회에 한하여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음(안 제8조).

아.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위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그러나 특별검사가 위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수사기간을 1차 60일, 2차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자. 특별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할 수 없도록 함(안 제13조).

차.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특별검사의 동행명령을 거부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8조).

법률 제 호

국가안전기획부 및 국가정보원의 불법 도청과 불법 정치자금 제공 등의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규정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①이 법에 의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으로 한다.

1. 1993년 2월 25일 이후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의 각종 불법 도청 조직의 설치·운영 실태, 도청 대상과 범위 등 불법 도청의 실상 및 불법 도청 자료의 보관·관리·활용 실태, 그리고 불법 도청을 통하여 얻은 각종 자료·정보의 유출, 유통과 관련된 실정법 위반사건 등.
2. 제1호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나는 각종 불법도청자료의 내용 중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 국가기관, 정당, 기업, 언론사 및 개인 등의 실정법 위반사건 등. 다만, 사적 대화, 단순 비방, 명예훼손 등 사생활보호와 관련된 사항은 수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②특별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도 철저히 수사하여 위법사실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③특별검사는 수사결과를 발표함에 있어 불법도청테이프의 내용 중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공개한다.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①국회의장은 제2조제1항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2일 이내에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1인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대통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인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③대한변호사협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때에는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

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2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④대통령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4조(특별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2. 이 법 시행일 전 1년 이내에 제1호의 직에 있었던 자
3.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5조(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2. 제7조에 규정된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관련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②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이탈하여 제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한 자를 소환 또는 조사할 수 없다.

③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

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3인,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20인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⑤제3항 또는 제4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관계 기관의 장이 이에 불응할 경우 특별검사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특별검사는 제2조의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참고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검사"로, "증인"은 "참고인"으로, "위원장"은 "특별검사"로, "국회사무처소속 공무원"은 "특별수사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본다.

⑧「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검찰관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조(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 ①특별검사는 7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에서 12인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그 후보자 중에서 6인을 특별검사보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한다.

③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60인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④특별수사관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수사의 범위 이내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⑤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조, 특별검사보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6조제8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8조(특별검사등의 의무) ①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이하 "특별검사등"이라 한다)과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특별검사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수사종료 후 공소를 제기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좌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특별검사등이나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제9조제3항·제4항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전에 1회에 한하여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④「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에 준용한다.

제9조(수사기간 등) ①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②특별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수사기간을 1차 60일, 2차 30일 연장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행하여져야 한다.

⑤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대한 보고에 관하여는 제15조 규정을 준용하되, 그 보고기간의 기산일은 사건인계일로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인계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 경우 사건의 처리보고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재판기간 등) ①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3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3제1항·제3항, 제377조

및 제379조제1항·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제11조(사건의 처리보고)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 공소를 제기하였을 경우와 당해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각각 10일 이내에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보수 등) ①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②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③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3급 내지 5급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한다.

④정부는 예비비에서 특별검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⑤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통신시설 등 장비의 제공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퇴직 등) ①특별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할 수 없으며,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②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사망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퇴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제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특별검사는 전임특별검사의 직무를 승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임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경우 제9조의 수사기간 산정에 있어서는 전·후임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합산하되, 특별검사가 사퇴서를 제출한 날부터 후임특별검사가 임명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수사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특별검사등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

을 하거나 판결이 확정되어 보고서를 제출한 때에 당연히 퇴직한다.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조(해임 등) ①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없다.

1.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2.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용결정이 있음에도 이에 반하는 취지의 수사활동을 계속하거나 제1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4. 특별검사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의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

②대통령은 특별검사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제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승계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후단, 수사기간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③대통령은 특별검사보가 사망하거나 사퇴서를 제출하여 퇴직하거나 특별검사보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특별검사보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수사관을 해임하거나 파견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교체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회계보고 등) 특별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보관하고 있는 업무관련 서류 등을 검찰총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공소제기일까지의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중간보고 하여야 한다.

제16조(재판관할)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17조(이의신청) ①제2조의 사건의 수사대상이 된 자 또는 그 배우자·직계존비속·동거인·변호인은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특별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특별검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내용에 따라 즉시 시정하고 이를 서울고등법원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접수한 서울고등법원은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수사기록의 열람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대상 조사내용이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를 이탈하였음을 인용한다.

⑤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는 당해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수사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⑦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불구하고 특별검사의 수사활동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⑧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와 별도로 이유를 소명한 서면으로 서울고등법원에 당해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⑨서울고등법원이 제4항 또는 제8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이의신청인과 특별검사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벌칙) ①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6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동행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특별검사등 및 특별검사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형법」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법은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검사가 퇴직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9조제6항의 규정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실효의 효과에 대한 특례) 이 법의 실효는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예 산 명 세 서

1. 소요예산(추계) : 960,000천원

2. 산출근거

가. 인건비 : 580,000천원

- 특별검사 1인, 특별검사보 6인, 특별수사관 60인
- 사무원·운전원 등 비정규직 약간인

나. 사무실 임차료, 각종 집기 및 장비 구입비 : 250,000천원

다. 업무추진비 및 활동비 등 : 130,000천원

<메모 및 질의>